

## 행정기관명

수신자  
(경유)

### 제 목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안내 말씀

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
귀하는 아래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로서 만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게 되면 「국세기본법」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.

또한 귀하가 물적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5조에 의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체납자	
체납액	
부동산의 표시	

끝.

발신명의 직인

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◆ 담당자 : ○○지방국세청 ○○○과 ○○○ 조사관(전화 : , 전송 : )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

전송( 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